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613호
- 나. 발 의 자 : 김길영 의원(찬성자 14명)
- 다. 발의일자 : 2024년 2월 5일
-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 내 공공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영주체인 서울시의 세수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시 체육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명명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안 제15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발 의 자 : 김길영 의원(찬성자 14명)
- 다. 발의일자 : 2024년 2월 5일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 개정안은 일반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고 시립체육시설의 명칭에 기업의 명칭이나 브랜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세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 명칭사용권(Naming Rights)이란 인간과 사물, 시설, 캐릭터 등에 대하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컬으며, 특히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사용권은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체육시설의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시설유지·관리 비용 등을 마련하고 후원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기업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Win-Win 효과가 나타남.¹⁾

< 명칭사용권 거래로 인한 기대효과²⁾ >

지방자치단체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재원확보 - 공공시설의 PR효과 - 지역자원의 발견, 창출효과 - 공공시설의 매력제고 - 지역 전체의 이미지 제고 - 새로운 관민연계 - 후원기업의 지명도 향상 - 공유재산의 유효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전효과 - 지역공헌의 자세를 어필하는 효과 - 스포츠, 문화, 예술활동에 공헌하는 자세(기대되는 사회적 책임의 이행)의 어필효과 - 관민연계에의 적극적인 자세를 통한 사회적인 신뢰성 획득 - 지역에 친화성 있는 광고매체로서 기업활동 등을 어필하는 효과 - 부대권리(광고스페이스, 특별석 등)의 유효 활용을 통한 홍보효과

1) 구장명칭사용권에 대한 활용방안(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1)

2) 일본의 공공시설 명명권 거래제도의 시사점(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6)

-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체육시설의 명칭사용권 비즈니스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국내에도 점차 도입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 시립체육시설 중 명칭사용권을 거래(사용허가)하고 있는 곳은 없음.

< 국내·외 명칭사용권 도입 사례 >

국가	구장 명칭	후원 기업	기간
한국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기아자동차	25년
한국	수원 KT 위즈 파크	KT	25년
미국	시티필드	Citigroup Inc.	20년
미국	바클레이스 센터	Barclays	20년
독일	알리안츠 아레나	Allianz	30년
영국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Emirates	15년
일본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AJINOMOTO	5년

※ 자료출처: 부산시의 공공시설 명명권제도 도입의 필요성, 2015

- 따라서 명칭사용권 활용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동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안정적 재원 마련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음.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명칭사용권) ① 시장은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체육시설의 명칭에 기업의 명칭이나 브랜드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상위법령에서는 명칭사용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있지 않으나,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

체육시설의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 「스포츠산업 진흥법」 >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또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제20호는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2006년 11월 조문신설 이래 별다른 문제 없이 시행 중이어서 조례 입법에 대한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명칭사용권"이라 함은 경기장 이름을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다만 세금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명칭을 특정 기업명으로 변경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기업 이미지에 따라 시설과 인근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공공가치를 기본적으로 고려

해야 하는바, 공공시설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 일례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희공간의 사용 허가를 금하고 있음.

○ 따라서, 허가하려는 체육시설의 명칭이 정치적·종교적 편향성을 띠거나 사회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조례로써 제한을 둘 것을 제안함.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5조의2(명칭사용권) ①·② (생략) <신설>	제15조의2(명칭사용권)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명칭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치적·종교적 편향성을 띠어 공공성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번호
161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길영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 2.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에 공공체육시설 명칭사용권 부여 및 사용료 징수를 통해 서울시 세수확보와 기업 마케팅 효과 극대화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체육시설의 명칭에 기업명 또는 브랜드 등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함(안 제15조의2제2항)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 2.5. 조례안 발의(대표발의 : 김길영) - (발의자) 김경훈, 김규남, 이효원, 황철규 의원 등 14명				
부 서 검 토 의 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에 대한 명칭사용권 부여는 우리시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등에서 시행 중이며, 공공체육시설의 명칭사용권 부여는 국내 야구 경기장 등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임-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상에 명칭사용권을 기 규정('06.11월)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 시 우리시 세입증대 및 기업 마케팅 효과 등이 있는 만큼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상 임 위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향 후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팀장	남규하(☎2133-2677)	담당	방준흠(☎2133-2678)